

대구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나33064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나330646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1. 24 선고 2021가단5536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하현열

변론종결 2022. 4. 14.

판결선고 2022. 5. 26.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1. 24. 선고 2021가단5536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20. 8. 15.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1,61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어머니인 망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 자금의 절반을 부담하였고, 위 부동산에서 D과 함께 거주하는 등으로 D을 부양하였다. D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C를 포함한 자녀 4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피고의 기여분을 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구체적 상속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그 기여분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되는데,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를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의 2),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정해지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망 D에 대하여 통상적인 부양의 정도를 넘어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D를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D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 등 위 4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기여분으로 정하기로 하는 협의를 있었다고 보기에다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발생한 2004. 5.경을 전후하여 C는 주로 중국에 체류하였고, 피고는 C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져있는 상태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을 뿐 C의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C를 상대로 한 소 제기에 따른 판결 및 그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지급명령 당시 C와 피고의 주소가 모두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일치하는 점, ②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 C와 피고의 주소 역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경호, 판사 이경한, 판사 박소영